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8일, 박정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0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하 의원)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회원권리 보호 (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어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105조, 제105조의2 신설).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안 제10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⑧ (생략) ⑨ 제8항에 따른 <u>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u>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u>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매년 -</u> ----- ----- ----- -----

현행	개정안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⑩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 -----. ⑫ -----제10항----- -----. ⑬ -----제9항 및 제10항-----. ⑭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⑮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

현행	개정안
<신설>	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항에 따른 임원 중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과 선거권자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신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제105조에 따라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령으로 정한다.</u> <u>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u> <u>1.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종류 또는 지역 등을 지정하여 권리를 신탁할 권리</u> <u>2.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u> <u>3. 제10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u> <u>4.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u> <u>5.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u> <u>6.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u> <u>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u>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u>

현행	개정안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 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 9. (생략) ② (생략)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05 조제10항-----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105조제10항----- -----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업무) -----

현행	개정안
업무를 행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3. 제105조제11항----- ----- ----- ----- -----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1)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에 대한 승인, 업무규정·재무정보 공개, 보고·조사 및 명령 등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용허락 거부금지, 통합징수, 회계·운영자료 공개의무 및 위반 시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이나 재허가 절차,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회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허가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참여와 통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감독)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청문)

제111조(과징금 처분)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 및 임원 선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²⁾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사후적 관리·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이후 장기간에 걸친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허가 이후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³⁾

2)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 경영과 관련하여, 회장 임금의 과도한 인상 및 소급지급, 임원 업무추진비·회의비·출장비 등의 과다 집행, 자문비 및 비상임이사 회의비의 과도한 지급,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3)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입법이 곧바로 기존 허가자의 기득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장래를 향하여 허가 존속 조건을 변경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신뢰보호원칙과의

아울러,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재산권자에게 총회 출석 및 의결권,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신탁단체가 권리자의 이익을 신탁받아 운영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참여와 통제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개정안은 권리의 일부 신탁,⁴⁾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자의 선택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의사결정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

관계에서도 재허가 제도 도입 자체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분야별 총 12개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음.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

영역	단체명	집중 관리 분야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어문, 사진, 연극, 영상, 미술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 제작자의 권리
	한국영화배급협회	영상 제작자의 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방송 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의 권리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자의 권리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저작권법상 권리

(자료: 2024 저작권백서)

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일부 신탁단체에서 저작권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미래에 취득하게 되는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신탁계약약관」으로 강제하고 있는바, 회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회원에 대한 전면적·인별 신탁을 강제하는 해외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법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도의 도입, 수수료 요율 승인 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회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다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관련 협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등 사후적 감독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수수료 요율에 대한 매년 승인제, 정관 변경 및 임원 취임 승인,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도 등은 단체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행정 부담 및 예측 가능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회원의 권리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도 분리 신탁 및 직접 이용허락 허용이 개별 저작권자를 통한 별도의 이용허락과 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이용허락이 혼재하여 이용허락 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이용자 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불투명한 사용료 산정·운영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신탁관리업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와의 사용료 협의 과정에서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분리신탁 제도 도입 시 이용자의 권리처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분리신탁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용자가 분리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면책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개정안 제105조의3제1항제5호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